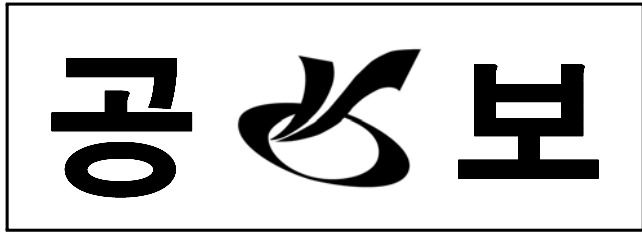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03호

2007년 10월 10일 수요일

## 차 례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84호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철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47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변경 인가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4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 4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863호 인천광역시서구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9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규 칙**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2007년 10월 9 일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84호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조례 제5조 제2호 내지 제3호 규정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사용일시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를 “①조례 제5조 제2호 와 제3호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같은 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자 본인은 자원봉사자 수첩을 지참하여야 하며 가족과 동행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조례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과 제2항에서 규정에 의거 처리시 관리관은 사용일시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용권 판매수입”을 “사용권 판매수입금”으로 하고, 본문 중 “당일에”를 “다음날 12시까지”로 하고, “익일에” 를 “다음날에”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47호

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2. 정비사업의 명칭 : 신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 3.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인천 서구 신현동 254, 264-5, 273-9, 273-10(169,157.6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 신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주옥삼
- 5.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 서구. 신현동 254번지
-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07년 10월 09일
- 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등 건축계획

- ① 대지면적 : 169,157.60㎡
- ② 건축면적 : 24,257.16㎡(건폐율 : 14.80%)
- ③ 연 면 적 : 565,352.61㎡(용적률 : 256.93%)
- ④ 사업규모 : 지하2~3층 / 지상16~33층 / 36개동 / 3,331세대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분양계획 : 아파트 1116세대, 상가
- 일반분양
- (59.993㎡ : 144세대, 59.999㎡ : 106세대, 84.857㎡ : 196세대, 84.875㎡ : 104세대, 84.928㎡ : 86세대, 84.992㎡ : 64세대, 103.722㎡ : 49세대, 114.947㎡ : 2세대, 156.289㎡ : 193세대, 170.347㎡ : 172세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48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11일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사업명 : 민영아파트 건립공사
- 2. 사업주체 : 대상산업(주) 대표 진재근, 대주건설(주) 대표 이송구
-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서구 검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3블럭 1~5롯트
  - 나. 대지면적 : 21,693.20㎡
  - 다. 연면적 : 65,467.264㎡
  - 라. 사업비 : 186,052,956,000원
  - 마.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13~ 15층 9개동 309세대
- 4. 사업기간 : 2007.10 ~ 2009.10
-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가. 건축법 제15조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나.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 다.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 사업계획승인 조건

1. 공사 착공전 측량을 실시하여 대지경계 및 계획고를 확인후 측량 도면을 첨부하여 착공 신고하고, 착공신고시 건축법 및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하여 대지비 및 건축비 등 사업비 내역을 기준으로 분양가 책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분양신청시 적정 분양가 산정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시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내용을 우리 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사항(문화체육과)
  - 가.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주거 부분 건축연면적의 합 또는 각각의 합이 1만제곱미터 이상
  - 나. 연면적 20,000㎡ 이하인 일반건축물(공동주택은 이외)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고, 20,000㎡ 초과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20,000㎡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20,000㎡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
  - 다.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비용의 1천분(1천분의7)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등의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공동주택 내 근린상가 부분1천분의 7)
  - 라. 서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90일 이전에 미술장식품(인)을 복수(작가 및 작품)로 첨부하여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미 통과시 건축물 사용검사가 지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감리대상이며,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시어 사용검사전 신청시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 (붙임 설계확인 결과 통보서)
6. 도시가스시설 관련사항(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
  - 가. 설계도서상에 기재한 바와 같이 개별난방 사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은 가능하나, 도시가스 공급은 저압방식으로 인입배관 위치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나. 도시가스 공급배관 매설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가 가능하여야 함
  - 다. 단지내 시설물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향후 기술검토 협의 시 한국 가스안전공사와 협의 검토되어야 함.
7. 급수공급 관련사항(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가. 신청지역은 급수가능한 지역이나 현재 검단개발사업소에서 검단2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내·외의 상수도기반시설이 완료되어야 가능(기존에 설치된 상수도시설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 및 폐쇄)함.

- 나. 저수도는 수도법 제18조제3항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설치 바랍니다.
- 다. 수도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세대별 역류에 따른 수돗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함.
8. 소방시설 관련사항(인천 서부소방서)
- 가.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 건축구조, 면적변경시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재협의 요망.
- 나.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에 예방총괄팀(2032-561-7164)에서 사전에 제조소 등 설치허가를 득한후 사용할 것.
- 다. 소방시설은 소방관계법령 및 기타 제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시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지정 신고는 붙임 안내문을 참조할 것.
- 라. 사용검사 신청시 소방준공필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결과(붙임)를 준수하여 적정시공후 증빙자료 및 감리자확인서를 사용검사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편의시설과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복지서비스과, 세부내용 붙임 참조)
11. 사용검사전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기준치 이상일 경우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지구단위계획상 방음벽 설치구간은 건축선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
12. 사용검사 신청시에는 각 공종별 전·후 사진 및 견본주택의 모습과 현장사진의 비교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사업지구의 대지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토록 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사용검사 신청시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은 공사 전·중·후 사진을 촬영 첨부하고 건축물 현황 측량(당장 포함)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토지 구획정리사업 관련사항(검단개발사업소)
- 가. 우수처리계획 : 아파트유역(2.169ha) 발생유량이 많아 대3-61호선 D500관로에 연결은 수리계산상 부적정할 것으로 예상(수리계산서 없음)되므로, D800관로 맨홀(M2-50)에 연결처리 요망.(관련도면 붙임 참조)
- 나. 도로경계구조물(옹벽) : 기초(옹벽저판)가 도로부지에 저축되지 않도록 시공시 유의할 것.
- 다. 부지 인접도로(중2-218호선)는 주변여건(지장물처리, 기존 공장진출입로 등)으로 지체, 현재 공사진행중인 구간으로 공동주택부지 사용에 따라 경계부에서 공사가 상호 간섭되므로 기반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착공전 검단개발사업소와 공사장 진·출입로 및 부지경계시설물(가설첸스 및 시설물 등)설치에 관한 협의결과서를 첨부할 것.
- 라. 검단2지구 [용도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 포함)(인고 제2001-140호, 2001. 8. 31) 및 인천도시관리계획 [검단2지구

제1종지구단환경영향평가 협의 포함(인고 제2001-140호, 2001. 8. 31) 및 인천도시관리계획 [검단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고 제2003-118호, 2003.06.23) 된 사항에 적합할 것.

마. 환지 예정지 사용승인 조건(제2007-29호, 2007.08.31)을 준수할것

16. 사용검사 2개월전에 입주자 사전점검(감리대상 제외공사 포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 검사 신청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전기시설 협의조건(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점)

가. 전력공급가능(단, 회선 신설후 공급가능)

나. 수전 희망시점(2009년10월) : 부하변동 및 계통변경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필요

18.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사용검사 신청시 동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납부요망 하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법률에 의거 소유자부담으로 사용검사전 건물표지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0. 광케이블공급이 가능하나 추후 통신박스 위치는 별도 협의후 설치요망. (KT서인천지점)

21.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공사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 가입 및 이행』 요망.(건설근로자 공제회)